

아동가족상담센터 규정

- 제정 : 2003. 3. 1
- 개정 : 2004. 9. 1
- 개정 : 2006. 9. 1
- 개정 : 2011. 4. 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수원대학교 부설 아동가족상담센터(Child & Family Counseling Center : 이하 “본 센터” 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직무) 본 센터는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아동문제와 가족문제 상담과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4조(사업) 본 센터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아동상담과 놀이치료
2. 가족상담
3. 가족생활교육
4. 위탁사업

제5조(소재지) 본 센터는 수원대학교에 둔다.

제6조(규정의 변경) 본 센터는 규정의 변경 및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7조(조직) 본 센터는 제3조와 제4조의 직무와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센터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직을 두고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아동상담부 : 놀이치료, 아동상담, 부모상담
2. 가족상담부 : 부부상담, 부모자녀관계상담, 고부문제상담, 결혼준비상담, 노인부양 및 갈등상담,이혼상담
3. 교육부 : 결혼준비교육, 부부대화교육, 갈등관리교육, 부부행복세미나, 부모교육세미나, 가족상담워크샵, 놀이치료워크샵
4. 위탁사업부 : 연구용역사업,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위탁사업 등

제8조(임원) ① 본 센터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센터장 : 1명
2. 전문위원 : 약간 명

- ②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전문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
-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임원의 직무)

- ①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인사, 재정, 관리 등 기타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탁사업 책임자에 대한 임면권 및 지휘감독권을 갖는다.
- ② 전문위원은 센터장과 협력하여 분담업무를 담당한다.

제10조(직원) 본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원과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.

- ① 상담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자격 보유자로 하며 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② 행정조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목적)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12조(구성) 위원회는 센터장과 전문위원 등 본교 전임교수들로 구성되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
제1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
1. 사업계획과 결산
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3.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회계 및 규정준용

제15조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상담비, 교육비, 기타 위탁사업비에서 충당한다.

제16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.

제17조(운영규정)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대한 운영규정 및 사업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으로 규정한다.

제18조(해산 및 재산귀속) 본 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, 권리, 의무는 수원대학교에 귀속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본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본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본 규정은 200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아동가족상담센터 운영세칙

□ 제정: 2006.09.01

□ 개정: 2008.02.27

제1장 사 업

제1조(사업규정) 본 센터의 사업은 본 센터 임직원 등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.

제2장 사업비관리

제2조(사업비관리)

- ① 모든 사업비는 학교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책임자가 별도 관리하고 센터장에게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다.
- ② 사업비 결산은 사업보고서를 첨부하여 연1회 학교에 제출한다.
- ③ 상담비, 교육비, 워크숍 참가비 등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3장 적립금

제3조(적립금 산출) ① 상담비, 교육비의 80%를 상담원과 교육담당자 수당으로 배분하고 학교적립금 10%, 센터에 10%를 적립한다.
②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등의 사업에서 수입금이 발생할 시에는 학교적립금으로 50%, 센터에 50%를 적립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대치) 2003년 제정된 내규는 본 규정으로 대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